시험 방역관리 안내(7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공통)			
코로나19	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절차	삭제, 기타 관련 사항 현행화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주최기관 사전 준비 시험 당일 조치사항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면접시험 조치사항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특별한 상황 격리자등 외출 하용 절차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 격리자등의 이동 시 방역 조치 	II. 시험장 방역 기본 조차사항 1. 사전 준비 2. 시험 당일 3. 시험 종료 후 4. 면접시험 5. 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관리 방안	• 목차 구성 변경 및 확진자 시험 응시 관련 내용 통·폐합
목차	 분 임 5. 코로나19 시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6. 법적근거 주요 내용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자 외출 시 주의사항 8.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하용 요청(예시) 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하용 시 안내사항(예시) 10.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하용 시 안내사항(예시1) 11.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하용 시 안내사항(예시2) 1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주요 질의 응답(FAQ) 	▷ 붙임 <\ 5~12. (삭제)	• 격리자등의 외출 하용 승인 절차, 격리 위반 시 벌칙 등 관련 내용 삭제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1. 개요				
1	2. 기본병향	2. 기본병향 ① 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① 시험 주최기관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수험자의 시험 관리 시 필요한 방역계획 및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 마련하여 적용 가능 - 시험 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상황별(사전 준비,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등), 장소별 방역사항 관리 및 관리체계 구성	• 문단 구성 변경(내용 명료화)		
	○ (특별조치) 격기대상(확진자 포함) 수함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과 더불어 특별 조치사항(외출 허용, 격리자등 시험장 방역, 이동)을 추가하여 운영	○ 수험자 중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 사항과 더불어 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관리 방안을 추가하여 운영	 '격리자등 시험장 방역'을 확진자 '별도 시험실 방역'으로 변경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격리 및 외출 허용 관련사항 삭제 		
	11.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구성	1. 주최기판 시전 준비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판 협조체계 구성 □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홍보(붙임1~4)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및 물품 확보 □ 고지사항 안내	1. 사전 준비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삭제) * 위치 이동 및 제목 변경 □ (삭제) * '2. 시험 당일'로 위치 이동 □ 사설 및 물품 확보 □ 안내사항 사전 고지 □ 유증상자 관리대책 수립	• 문단 구성 변경(위치 조정, 제목 변경)으로 내용 명료화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2	○ (협조체계 구성) 코로나19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수험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시험 주최기관↔시·도↔관할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자료출처: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란) ○ 증상: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무증상에서 증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 전파경로: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발)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발)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발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사율, 말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① (표면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약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②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십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흡입, 흡입기 등 ③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정,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협조체계 구성) 필요 시, 코로나19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사·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수험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연계할 수 있는 연락처 확보 * 시험 주최기관↔시험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의료기관(필요 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 전파경로: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을(비밀)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을(비밀)을 다른 사람이 말접접촉(주로 2m 이나)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를 생성 시술 말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밀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② (표면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약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②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③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밀을 만드는 환경)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기존 병상 배정 등을 위해 구축했던 협조체계를 필요 시 유관기관 연락처 확보로 변경
3	□ 시설 및 물품 확보 (추가) ○ (관리 대기실) 유증상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대기 가능한 시험장 내 별도 격리공간* 확보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별도 시험실) 유증상자의 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경우,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과 동선을 분리한 별도 시험실 및 회장실 확보	□ 시설 및 물품 확보 ○ 시험실 구성 - (수함자 간격) 시험실 내 수함자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 책상 배치 간격 유지, 좌석 한칸 비우기, 칸막이 활용 등 수함자간 거리두기 방안 시험실 특성에 맞게 적용 - (관리 대기실) 유증상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대기 가능한 시험장 내 별도 공간* 확보 * 문을 닫을 수 있으면서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자정하고, 기급적 마스크를 착용한 시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유증상자 시험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확인 시 분리를 위해,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과 동선을 분리한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 확보 - (확진자 시험실) '5. 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관리 방안' 참고	문단 구성 변경(위치 조정, 제목 변경)으로 내용 명료화 시험실 구성에 관한 내용 통합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 (방역물품)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용 외 필요한 경우 수함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 (위생물품)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종이타월 등 위생물품 충분히 비치 - 기침 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험장 내 손소독제, 종이타월 (휴지 등) 및 휴지통 곳곳에 비치	○ 방역・위생물품 확보 - (방역물품)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 감독관 등 시험 운영자용 외 필요한 경우 수형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 (위생물품) ①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종이타월 등 위생물품 충분히 비치, ②기침 시 즉시 차리가 가능하도록 시험장 내 손소독제, 종이타월(휴지 등) 및 휴지통 곳곳에 비치 《시험실별 마스크 착용 권고시항 및 개인보호구 예시(참고)> 구분 시험 운영자 수현자 일반 시험실 마스크 착용 권고시항 및 개인보호구 예시(참고)> 구분 시험 운영자 수현자 일반 시험실 마스크 착용 권고시항 및 개인보호구 에시(참고)> 구분 시험 운영자 마스크(착용 권고) 기원 * 플요시 개인보호구 마스크(차명 권고) * 플요시 개인보호구(단는 고급), 일화용 방수성 긴밀가운(비닐가운 포함) (강력히 권고), 일화용 장갑 * 플요시 개인보호구 인면보호구(단는 고급) 및 일화용 방수성 긴밀가운(비닐가운 포함) * * 플요시 개인보호구: 인면보호구(단는 고급) 및 일화용 방수성 긴밀가운(비닐가운 포함) * * * * 플요시 개인보호구: 인면보호구(단는 고급) 및 일화용 방수성 긴밀가운(비닐가운 포함) * * * * * * * * * * * * * * * * * * *	• 시험실별 착용 권고 또는 필요 시 사용 가능한 방역물품 예시 요약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4	□ 고자사항 안내 ○ … <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 -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철저한 손위생 안내 - 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천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수험자) - 유증상 수험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 안내시항 시전 고지 ○ ··· 《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 (시험 운영자) -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철저한 손위생 안내 - 수험자가 아닌 환자, 유증상자는 시험장 출입 자제 안내 (수험자) - 수험자 중 확진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하며, 유증상자는 시험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 안내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격리대상자의 시험장 출입금지를 환자, 유증상자의 시험장 출입 자제 안내로 변경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시험 당일 유증상자 응시 제한 조치 삭제, 별도 시험실 이용 및 시험 종료 후 의료 기관 진료 안내로 변경
	□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홍보(붙임1~4) ○ 수험자,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확인 ○ 시험 관리자 등 관련자 대상 코로나19 특성, 손씻기, 올비른 미스크 착용법 등 감염예방 교육 및 유증상자 발생 대비 교육* 수행 *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가침, 호흡곤란 등) 등 유증상자 발생 대비 감염관리총괄, 감염관리책임자, 운영요원 등의 업무를 분정하여 관리 책임감 부여 및 시전 교육 철저	 □ 유증상자 관리대책 수립 ○ 수험자, 시험 운영자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확인 ○ 시험 운영자 대상 코로나19 특성, 손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 감염예방 교육 및 유증상자 발생 대비 교육* 수행 -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유증상자 발생 대비 감염관리총괄, 감염관리책임자, 운영요원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 책임감 부여 및 사전 교육 	• 용어 명료화
구성	2. 시험 당일 조치사항 다시험장 다시험실	2. 시험 당일 □ 시험장 출입관리 □ 환경 위생 관리 □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 문단 구성 변경(위치 조정, 제목 변경)으로 내용 명료화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 사람장 ○ (출입관리) 관계자 외 출입 통제하고 손소독 및 필요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입장 - (운영요원)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외부인 출입 통제,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대기실에 감염관리담당요원* 배치 * 유증상자 관리 담당으로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 필요시 개인보호구 (마스크(KF94동급이상), 일화용 장갑,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일화용 방수성 간팔기운(비닐기운 포함)) 착용	□ 시험장 출입관리 ○ (입실) 손소독 및 필요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입장 - (시험 운영자)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대기실에 감염관리담당요원* 배치 * 유증상자 관리 담당자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 필요시 개인보호구 (마스크(KF94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비닐기운 포함)) 착용 가능	문단 구성 변경(위치 조정, 제목 변경)으로 내용 명료화 관계자 외 출입 통제 내용 삭제(시험 주최기관 방침에 따름)
5	 ○ (유증상자 관리) 증상발생 수험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 (관리 대가실) 출입 관리 또는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대가실로 이동하여 체온 측정(고막체온계 등)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 - (별도 시험실)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유증상자 시험실 인솔 등을 담당하는 운영요원(시험 진행요원은 개인보호구 착용)을 별도로 배치하여 유증상자 시험 누락 방지 	- (유증상자 관리) 증상발생 수험자 확인 시 별도 장소로 분리 ① (관리 대기실) 출입 관리 또는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대기실 로 이동하여 체온 측정(고막체온계 등)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 ② (별도 시험실)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 는 별도로 마련된 유증상자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유증상자 시험실 인솔 등을 담당하는 운영요원(시험 진행요원은 개인 보호구 착용 권고)을 별도로 배치하여 안내	문단 구성 변경(위치 조정, 제목 변경)으로 내용 명료화 시험 당일 유증상자 응시 제한 관련 내용 삭제
	(추가)	○ (퇴실) 시험을 종료한 수함자 또는 수험번호에 따라 퇴실 시간 순차적 조 정 등 퇴실 시 수험자가 몰리지 않도록 조치	• 퇴실 시 조치사항 위치 이동
5~6	□ 환경 위생 관리 … ○ (환기)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개방이 어려운(기상 상황 등) 경우 매 휴식시간 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자연 환기시 맞통풍이 기능하도록) 실시 *사람전 수는 시간 점심시간 사람 종료 취(1회 환기시 10분 이상)에 환기	□ 환경 위생 관리 … ○ (환기) 시험장은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주기적 환기 -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개방이 어려운(기상 상황 등) 경우 매 휴식시간 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자연 환기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실시 *사험전 수는 시간 점심시간 사험 종료 취(회 환기시 10분 이상)에 환기 - 회장실은 상시 외부 환기 유지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는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 및 팔다는 기기 사용 설명사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붙임시' 참고)	• 지침 내 환기 관련 내용 통합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 시험장 … ○ (유증상자 관리) 일반시험실 수험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관리 대기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 - 시험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의사가 있는 수험자의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 진행 - 김염관리책임자(김독관)는 유증상자가 발생한 동일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자에게 확진자 발생 시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 일반시험실 수험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관리 대기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 - 시험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의사가 있는 수험자의 경우 유증상자 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 진행 - 유증상자 중 확진자 발생 시, 감염관리책임자(감독관)는 유증상자가 발생한 동일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자에게 2주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안내 * '생활병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부분 내용 기술 명료화 및 마스크 착용 권고 안내 추가* 관련 지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3. 사람 종료 후 조차사항 (퇴실) 시험을 종료한 수험자 또는 수험번호에 따라 퇴실 시간 순차적 조정 등 퇴실 시 수험자가 몰리지 않도록 조치 (증상 관찰) 시험에 참여한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은 시험 시행일 로부터 10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자율 모니타링 - 채점요원은 채점 작업일로부터 10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자율 모니타링, 증상 관찰	3. 시험 종료 후 (식제) * '1. 시전 준비'로 위치 이동 (식제)	문단 구성 변경(위치 조정, 제목 변경)으로 내용 명료화 방역 지침 현행화(감염취약시설 외 접촉자 별도 관리사항 없음) 관련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지체용)' 대응 지침(지지체용)' 대응 지침(지지체용)' 대응 지침(지지체용)' 대응 지침(지지체용)' 대응 지침(지지체용)' 대응 지침(지지체용)'
7	4. 면접시험 조치시항 ○ 면접시험은 기급적 비대면 시험(화상 면접 등)을 권고 ○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장 방역 기본방향 준수 - (대기실) 대기장소의 수함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좌우였두)를 권장 - (면접실) 시험실(면접실)에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수험자와 면접관 간 비말 감염 가능성 차단, 면접실 내 환기는 1일 최소 3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 실시 ※ 언어 또는 청각 장애 등으로 화상 면접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면면접 시행	4. 면접시험 ○ (삭제) ○ 시험장 방역 기본방향 준수 - (대기실) 대기장소의 수험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좌우와뒤) 권장 - (면접실) 비말 감염 기능성을 낮추기 위해 수험자와 면접관 간 거리 확보(최소 1m 이상)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면접실 내 환기는 1일 최소 3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 실시('붙임4' 참고) ※ (삭제)	 제목 변경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대면 면접 제한 관련 내용 삭제 내용 명료화 및 칸막이 사용 관련 내용 삭제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5. 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관리 방안 ※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준수와 더불어 추가 조치 필요 □ 사전 준비사항 ○ (확진자 확인)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수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확인 * 시험일이 격리 권고 기간에 포함 시, 수험자가 시험 주최기관에 연락 (유선 등)	• 기존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차사항' 내용 전체를 '5.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 관리 방안으로 통합
		○ (시험장 구성) 확진자 시험 응시를 위한 별도 시험장 또는 시험실 확보 - (동선 분리) 확진자, 일반수험자가 겹치지 않도록 동선분리(시간, 장소 분리 등)가 가능하여야 하고, 별도 화장실 확보 - (수험자 간격 유지) 자리 배치 시 가급적 앞·뒤·좌·우 간격 2m 이상 (최소 1m 이상) 확보	
8	(추기)	○ (물품 확보) 시험관리에 필요한 방역물품*, 개인보호구** 및 필요시 비상 상황 대비 시험장 밖 구급차 준비 *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타슈, 소독제, 필요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등 **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필요시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일회용 방수성 긴팔기운 (비닐기운 포함)	
		○ (시전 안내) 방역수칙 준수 및 협조 요청시항 시전 안내 - (식사) 시험 중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 도시락 및 개인 음용수 준비 권고 *시험실 내 수험자의 자리에서 식사하며, 식사 시 대화 자제,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안내(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식사 후 화장실(양치 등 개인위생)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 시험 당일 ○ (마스크 착용) 관계자 및 수험자는 KF94동급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적극 권고 - 수험자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상시 착용 권고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 시험 운영 관계자*는 시험장 입장부터 밖으로 퇴장 시 까지 책용 권고 *시험 운영관리 중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	
		○ (시험지 배부) 수험자간 시험자와 답안자를 전달하지 않도록 시험 감독관 이 문제자와 답안자를 수험자에게 직접 배부 *개인보호구 착의 상태에서 식사, 회장실 이용, 마스크 만자는 것 등	
		금지, 탈의 후 손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코입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시험 종료 후 ○ (시험지 수거) 수험자간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시험 감독관이 별도의 답안지 화송용 비닐봉투에 담은 후 소독타슈*로 닦고 건조 후 화송용 상지에 포장(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만 가능	
		○ (시험지 관리) 수험자가 응시한 문제(답안)자는 별도 비닐봉투에 넣어 소독타슈로 닦고 건조 후 상자에 포장(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하여 시험자구로 이송 - 시험지(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 반드시 손소독제로(70% 에탄올) 손위생을 실시하고, 답안자는 가급적 24시간 보관 후 채점	
		○ (폐기) 시험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별도 지침*에 따라 처리 * '코로나비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코로나 비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등	
구성	##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1. 특별한 상황 2.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3.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 외 추가 필요 사항)	(삭제)	

쪽	현행(6-1판)	7판 개정	개정사유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수 험 자 유 의 사 항 안 내 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수 험 자 유 의 사 항 안 내 문	•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시험장 출입 전면통제 내용 삭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치단을 위해 0000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형을 이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코로니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시험 응시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1. 수험자 협조 시항 	1. 수험자 협조 시항 - 최근에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격리자등*의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접촉자 마스크 착용 강조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포함	
	○ 모든 수험자는 시험 주최기관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바랍니다. -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수험자는 시험 주최기관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바랍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별도 시험실 응시 등 시험 주최기관의 안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유증상자 응시 제한 내용 삭제	
붙임5	붙임 5. 코로나19 시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삭제)	• 관련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지체용)') 정의에 따름	
분임6 ~ 분암12	붙임 6. 법적근거 주요 내용 붙임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자 외출 시 주의시항 붙임 8.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하용 요청(예시) 붙임 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하용 시 안내사항(예시) 붙임 10.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하용 시 안내사항(예시1) 붙임 11.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하용 시 안내사항(예시2) 붙임 1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주요 질의 응답(FAQ) - 외출 하용 관련	(삭제)	•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외출 허용 승인 절차 및 외출 시 주의사항 관련 내용 삭제	